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 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4-05-15

## 부산지방법원

### 제5민사부

### 판결

사건번호 2013가합20420 보험금지급청구권 지위확인 등  
원고 A  
피고 B 주식회사  
변론종결 2014. 4. 3.  
판결선고 2014. 5. 1.

### 주문

- 이 사건 소 중 보험금지급청구권 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32,327,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# 청구취지

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망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
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#### 가. 신분관계

- 1) 원고와 망 C(D.생, 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남매사이이다.
- 2) 원고와 망인은 1976. 2. 경 길을 잊고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고아원에서 같이 크다가 1982. 2. 19.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E씨로 각자 일가 창립을 하여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.
- 3) 망인은 사망 당시 미혼이었다.

#### 나. 보험계약의 체결

망인은 2012. 10. 8.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#### 다. 보험사고의 발생

망인은 2012. 12. 19. 09:48경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48km 지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진로변경을 잘못 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갓길의 방호벽을 차례로 충격한 사고로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. 1. 19. 21:22경 사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보험사고'라 한다).

#### 라.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

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사망 보험금 및 부상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. 원고가 자인하는 망인의 과실비율 20%를



반영한 사망보험금 및 부상보험금의 액수는 32,327,304원[= (사망보험금 30,000,000원 + 부상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0,409,130원) × 0.8]이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]

## 2. 보험금지급청구권자의 지위확인청구의 적법 여부

직권으로 보험금지급청구권자 지위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.

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·위험이 있고, 그 불안·위험의 제거를 위해 당해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·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인정되는 만큼,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(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).

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청구와 별도로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## 3.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

### 가. 당사자들의 주장

#### 1)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,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서 보장한 내용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부상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



있다.

## 2) 피고의 주장

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부의 기재가 없고, 설사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3순위의 상속인에 불과한 원고는 상속인수색의 공고 등을 통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상속인의 부존재까지 추가로 입증하여야만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, 이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.

## 나. 판단

무릇, 자연혈족이란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,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, 사람의 신분관계는 비단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. 따라서 망인과 모를 같이하는 혈연관계에 있는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출생만으로 망인과 남매사이가 되므로 피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.

피고는 상속인수색 공고 등을 통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상속인의 부존재까지 추가로 입증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나, ① 민법 제1057조에서 정한 상속인수색의 공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의 상속재산 처리절차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인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, ② 원고로 하여금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까지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(더군다나 원고는 1976. 2.경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가 되었는데, 그로부터 약 38년이나 지난 시점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 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4-05-15

에서 원고가 그 부모의 생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)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[만약 장래에 망인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위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(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다44747 판결, 서울고등법원 1986. 3. 12. 선고 85나4365 판결 참조)]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위 보험계약의 수의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2,327,30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의 보험금 지급 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. 1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보험금지급청구권자 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 
므로 이를 각하하고, 보험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 
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차경환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 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4-05-15

판사 장민경

판사 허서윤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 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4-05-15

## [별지]

### 보험계약

- 보험종목 : Readycar 업무용자동차보험
- 계약번호 : G
- 피보험차량 : H 봉고 III 1톤
-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: C
- 사망보험금 수의자 : 법정상속인
- 보험기간 : 2012. 10. 8.부터 2013. 10. 8.까지

| 담보종목    | 보험가입금액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| 가입여부                  | 담보별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인배상 I  |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|       |         |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 2012. 10. 8. ~ 2013. 10. 8. |
| 대물배상    | 1억 원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 2012. 10. 8. ~ 2013. 10. 8. |
| 대인배상 II | 무한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 2012. 10. 8. ~ 2013. 10. 8. |
| 자기신체사고  | 1<br>인<br>당            | 사망    | 부상      | 후유장애  | <input type="radio"/> | 2012. 10. 8. ~ 2013. 10. 8.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3천만 원 | 1천5백만 원 | 3천만 원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무보험차상해  |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 원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| <input type="radio"/> | 2012. 10. 8. ~ 2013. 10. 8. |